「지방정부연구」 제24권 제1호(2020 봄): 51-67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Vol.24 No.1 (2020 Spring)
http://dx.doi.org/10.20484/klog.24.1.3

출산장려금의 출산율 제고 효과에 관한 연구:
인구이동 매개효과 분석을 통한 시·군·구 비교분석

허 만 형

국문요약

한국은 저출산 문제에 직면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출산장려금이 출산율 제고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지,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쳐 출산율 제고로 이어지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단위는 전국 226개 시·군·구이며, 분석 자료는 통계청의 e-지방지표와 보건복지부의 임신육아종합포털사이트에서 수집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농어촌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지역의 문제였다. 전국을 하나의 단위로 설정하고 분석하면 출산장려금의 출산율 제고효과는 인구유입 효과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시·군·구 세 유형을 개별적으로 보면 구 단위의 출산장려금 효과는 거의 없고, 인구유입이 합계출산에 영향을 미쳤다. 시 단위는 첫째에서 넷째 자녀의 출산장려금에 이르기까지 출산율 제고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시 단위에서는 출산장려금과 인구유입이 자녀출산에 영향을 미쳤지만 매개효과는 거의 없었다. 군 단위에서는 출산장려금이 인구 유입에도, 출산율 제고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매개효과도 군 단위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주제어: 저출산, 출산장려금, 매개효과, 인구유입, 다자녀

Ⅰ. 서론

한국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해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 2019)의 자료에 의하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명으로서 홍콩, 푸에르토리코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로 기록되었고, 국내 통계자료(통계청, 2019)에 의하면 2018년에는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떨어져 1명 선도 붕괴되었다. 정부는 초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 육아 및 모성휴가와 같은 다양한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다양한 저출산 정책 중에서 출산장려금은 기초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되는 현금급여 프로그램으로서 2002년 전남 함평군에서 가장 먼저 도입되었다. 출산장려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녀 출산과 거주조건이 확인되면 자녀 출산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수준의 현금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도입 초기에는 비판적 시각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 정책은 전국으로 확산되어 현재 대부분의 기초자차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출산장려금 제도 도입 이후 이 제도의 출산율 제고 효과와 더불어 다자녀 출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있었지만 반드시 긍정적 결과로 귀결되지는 않았다. 긍정적 결과도 있었지만(박창우·송헌제, 2014; 이병호·박민근, 2017), 회의적인 결론(석호원, 2011)도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는 "혁신성"과 긍정적 효과에 힘입어 전국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에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급여 수준과 제공 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현금급여 수준이 낮아 몇 만원밖에 안 되는 지역도 있고, 수 백 만원 혹은 수 천 만원까지 제공되는 지역도 있다. 또한 첫째 자녀에 대해서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둘째 자녀 출산부터 지급하는 지역이 있고, 첫째 자녀에서부터 셋째 자녀까지만 지급하는 지역이 있으며, 다섯째까지만 지급하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다섯째 이상의 자녀까지 지급하는 지역도 있다.

출산장려금 수준의 다양성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도입한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이 다양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우려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출산장려금 수준이 높은 지역으로 인구가 이동한다면 출산율 제고의 긍정적 효과가 인구이동에 의한 효과에 의해 상쇄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였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시·군·구별로 출산장려금이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쳐 출산율 제고로 이어지는지, 출산율 제고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 분석 자료를 근거로 출산장려금의 효과적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출산장려금의 출산율 제고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저출산을 먼저 경험한 많은 국가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실험을 실시해 왔고, 그 효과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모든 연구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효과가 나타났다는 결론이 나오지는 않았다. 그 정책의 유형을 현금급여,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 해소, 육아휴직, 모성휴가와 같은 정책수단으로 나누어 효과를 분석한 결과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구분 없이 출산율 제고에 기여했다(Björklund, 2006)는 연구가 있었고, 앞은 세 가지 정책수단은 효과가 있었지만 모성휴가는 기대한 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김현숙·정진화, 2019)는 연구도 있었다.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는 출산장려금 같은 현금급여의 효과가 나타났지만(최영·김슬기, 2017), 북유럽 국가 대상의 연구에서는 현금급여 효과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결과(Andersen, Drange, and Lappegård, 2018)가 나오기도 했다. 소득계층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에서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에서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는 연구(Riphahn and Wiynck, 2017)도 있었다. 출산장려금 같은 현금급여의 출산율 제고 효과에 대해서는 이처럼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혼재되어 있었다.

우리나라도 출산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이 시행되고 있는데, 출산장려금은 현금급여로 분류되는 정책수단이다. 이 출산장려금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분석한 결과 그 결론은 다양했지만 〈표 1〉에서와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출산장려금이 출산율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한 연구, 출산장려금이 출산율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한 연구, 출산장려금이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출산 가능한 여성의 인구유입에 영향을 미쳐 최종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간접효과가 있다는 연구, 그리고 이 같은 간접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였다.

〈표 1〉 출산장려금의 출산율 제고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효과		저자	연구대상	분석방법
직접 효과	있음	이명석·김근세·김대건, 2012	전국 기초	집적시계열분석
		이충환·신준섭, 2013	전국 기초	다중회귀분석
		최은희·조택희, 2016	전국 광역	패널자료/고정효과모형
		이병호·박민근, 2017	경기도 기초	패널자료/고정효과모형
		김우영·이정만, 2018	충남북 기초	패널자료/회귀분석·구조방정식모형
	없음	석호원, 2011	서울 기초	패널자료/다중회귀분석
		이미옥·명성준, 2015	경남 기초	설문자료/다중회귀분석
		김민곤·천지은, 2016	서울 기초	패널자료/다중회귀분석
		이승주·문승현, 2017	전국	설문·패널자료/교차분석·로짓회귀분석
간접 효과	있음	송헌제·김현아, 2014	전국 기초	패널자료/인구이동기본모형
	없음	박창우·송헌제, 2014	전국 기초	패널자료/고정효과모형

출산장려금이 출산율 제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다. 이 같은 결론에 이른 연구 중에는 출산장려금을 포함한 경제적 지원, 건강지원, 정보제공 등 다양한 출산장려정책 중에서 경제적 지원정책만이 출산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연구(이충환·신준섭, 2013)가 있었다. 또한 출산장려금은 출산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여성 근로시간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최은희·조택희, 2016)를 내놓은 연구도 있었다. 이 두 연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를 연구 단위로 설정한 연구였다.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또다른 연구에서도 경제적 지원정책 중에서 출산장려금의 실효성에 대한 는 결과(이명석·김근세·김대건, 2012)도 긍정적이었다. 경기도에 국한된 연구 결과이기는 하지만 출산장려금은 다자녀 출산의 정책수단으로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이병호·박민근, 2017)도 있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이 기대치만큼 자녀출산 결정과 관계가 크지 않다는 두 번째 유형의 연구도 있었다. 이 유형 연구는 대체로 전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니라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라는 특징이 있었다. 이미옥·명성준(2015)의 연구에 의하면 다양한 출산장려정책 중에서 보육비 지원정책만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적 지원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정책들은 출산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경남의 한 농촌 지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여서 일반화시키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농어촌 지역이라는 지역 한계를 고려할 경우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대도시 지역인 서울시 기초자치단체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출산장려금의 정책효과에 대해 부정적 결과가 나온 연구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출산장려금 정책은 합계출산율, 출생아수,

그리고 연령별 출산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석호원, 2011)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장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도 출산장려금을 포함한 다양한 정부의 정책수단은 여성의 출산 의사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효성을 담보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승주·문승현, 2017; 김민곤·천지은, 2016).

출산장려금 수준에 따라 인구이동을 유발시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매개효과를 설정하고 진행한 연구도 있었다. 김우영·이정만(2018)의 연구에서는 출산장려금 제도는 출산율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지만 출산장려금이 여성의 순유입을 높여 출산율이 증가되는 효과는 크지 않으며 그보다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의 출산율을 높인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이 연구에 의하면 매개효과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충청지역 기초자치단체가 대상이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한 이미옥·명성준(2015)의 연구와는 달리 출산장려금이 출산율 제고의 영향요인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출산장려금 그 자체가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생애주기 중 출산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여성 인구의 이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도 있었다. 출산장려금이 출산 가능 여성의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매개효과가 발생했다는 연구결과였다(송헌제·김현아, 2014). 이 논문에서는 이 같은 간접효과가 나타날 경우 장기적으로는 출산장려금이 출산율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출산장려금은 대체로 첫째 자녀에서 다섯째 자녀에 이르기까지 차등적으로 제공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자녀 출산 그 자체보다는 다자녀 출산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이병호·박민근, 2017)뿐만 아니라, 유사한 접근이기는 하지만 첫째 자녀나 둘째 자녀의 출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셋째 자녀 이상부터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박창우·송헌제, 2014)도 있었다. 따라서 출산장려금의 합계가 아니라 대체로 첫째에서 다섯째 자녀에 이르기까지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출산장려금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도 의미 있는 연구 과제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상의 선행연구 검토 결과 해외 연구뿐만 아니라, 국내 연구에서도 출산장려금의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는 대도시나 농어촌과 같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첫째 자녀부터 출산장려금 지급을 정책수단으로 사용할 경우와 다자녀 출산을 정책목표로 삼을 경우도 그 효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출산장려금이 출산율 제고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가 직접효과인지 아니면 출산 가능 여성의 인구 이동에 영향을 미쳐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방식의 간접효과인지에 대해서도 일관된 결론이 나타나지 않았다.

Ⅲ.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본 연구의 연구단위는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시·군·구이며,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통계청의 e-지방지표와 보건복지부의 임신육아종합포털사이트에서 수집하였다. 두 사이트에서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자료가 정리되어 있는데 기초자치단체는 2018년 기준 75개 시, 82개 군, 69개 구으로 구성되어 있다. e-지방지표에서는 합계출산율과 인구유입률, 임신육아종합포털사이트에서는 첫째 자녀에서부터 다섯째 자녀까지의 출산장려금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통계청의 e-지방지표에서 인구이동은 순이동 인구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이 값은 전입인구에서 전출인구를 뺀 값을 의미한다. 이 논문에서는 순이동 인구를 현재 주민등록인구로 나누어 백분율로 처리한 값을 인구유입률로 정리하여 활용하였다. 명칭을 인구유입률로 정리하였지만 실제로는 인구유출입률이다. 이 값이 음수이면 인구유출을 의미하고, 양수이면 인구유입을 의미한다.

2. 분석모형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 역할을 하는 합계출산율뿐만 아니라 인구유입률 및 출산장려금에 대한 시·군·구 비교분석을 실시한 후 〈그림 1〉에서와 같이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첫째 자녀부터 다섯째 자녀까지 제공되는 출산장려금이 직접 출산율 제고의 영향요인으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출산장려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으로 인구이동을 유인함으로써 출산율 제고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제공되는 출산장려금은 첫째 자녀 출산에서부터 시작하여 다섯째 자녀의 출산에 이르기까지 그 수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모두 합산하여 하나의 변수로 활용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았다. 대신에 첫째 자녀에서부터 다섯째 자녀에 이르는 각각의 출산장려금을 하나의 독립변수로 활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는 〈그림 1〉에서처럼 첫째 자녀에서 다섯째 자녀의 출산장려금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β값을 ①/②/③/④/⑤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였다.

〈그림 1〉 출산율 영향요인에 관한 구조방정식 분석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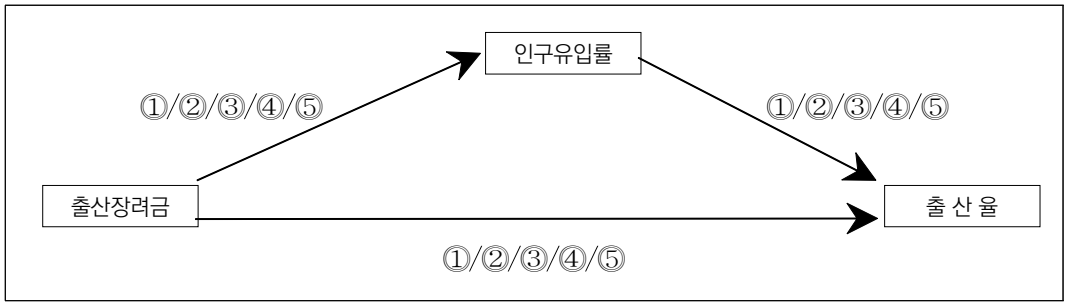

3. 시·군·구 비교분석

선행연구 분석 결과 지역의 특성, 즉 구 단위로 구성된 대도시 지역인지, 군 단위로 구성된 농어촌 지역인지, 아니면 시 단위가 중심이 되는 도농통합형 소도시에 속하는 지역인지에 따라서 출산장려금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평균비교와 같은 통계분석을 활용하여 출산율, 인구유입률, 그리고 출산장려금에 대한 시·군·구 비교분석을 먼저 실시한 후 출산장려금과 인구유입률이 출산율 제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시·군·구 별 구조방정식의 결과를 기초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분석결과

1. 출산율과 인구유입률의 시·군·구 비교분석

출산율에 대한 시·군·구 비교분석 결과 저출산 문제는 농어촌 지역이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라, 대도시 지역이 더 심각한 상태라는 결과가 나타났다. 〈표 2〉에서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전국 구 단위의 평균 출산율은 가장 낮은 0.8696인데 반해 농어촌으로 구성된 군 단위의 평균 출산율은 1.2371로 세 지역 중에서 가장 높았다. 시 단위의 평균 출산율은 1.0990로 중간이었다.

전국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 관악구로서 합계출산율이 0.60이었고, 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해남군으로 1.89이었다. 구 단위의 최저 출산율과 최고 출산율은 0.60(서울 관악구)과 1.61(부산 강서구)이었고, 시 단위의 최저 출산율과 최고 출산율은 0.80(경기 과천시)과 1.49(충남 당진시)였으며, 군 단위의 그것은 0.74(전남 구례군)와 1.89(전남 해남군)였다. 특이한 사항은 군 단위만으로 볼 때 전남에서 최저와 최고 출산율이 동시에 나타났다는 점이다.

구 단위의 저출산율이 군 단위의 저출산율보다 더 심각한 문제였다. 시·군·구별 합계출산율 1.0보다 낮은 지역의 비율을 보면 이같은 문제가 더 뚜렷이 나타났다. 전국 69개 구 중에서 76.8%에 해당되는 53개 지역이 합계출산율 1.0이 되지 않았다. 25개 자치구가 있는 서울에는 합계출산율이 1.0보다 높은 구가 한 곳도 없었다. 전국 75개 시 중에서 21.3%에 해당되는 16개 지역이 합계출산율 1.0보다 낮았고, 82개 군 중에서는 19.5%에 해당되는 16개 지역이 합계출산율 1.0보다 낮았을 뿐이었다.

인구유입률을 보면 구 단위는 인구유출이 인구유입을 압도하는 현상이 가장 심했고, 시 단위는 인구유입이 인구유출보다 많았다. 군 단위는 인구유출이 인구유입보다 많지만 구 단위처럼 심한 편은 아니었다. 〈표 2〉에서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전국 구 단위의 인구유입률은 -0.9000인데 반해 시 단위는 0.3539였다. 여기에 비해 군 단위의 전국 평균 인구유입률은 -0.4023 수준이었다.

전국에서 인구유입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도의 고성군으로서 그 값은 -5.93이었고,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 화성시로 8.25였다. 구 단위의 최저 인구유입률과 최고 인구유입률은 인천 동구(-4.73)와 인천 서구(3.80)로 같은 인천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였다. 시 단위의 최저 인구유입률과 최고 인구유입률은 경기도 안산시(-2.82)와 경기도 화성시(8.25)로서 역시 경기도의 기초자치단체였다. 인천과 경기도의 경우 수도권이라는 특수성을 고리로 인구 이동이 심한 지역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군 단위의 경우는 지역이 달라 최저는 강원도 고성군(-5.93)과 최고는 경북 예천군(8.18)이었다.

〈표 2〉 시·군·구의 출산율과 인구유입률의 비교

구분	지역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최소	지역명	최대	지역명
출산율	구	.8696	.1710	.60	관악구(서울)	1.61	강서구(부산)
	시	1.0990	.1416	.80	과천시(경기)	1.49	당진시(충남)
	군	1.2371	.2712	.74	구례군(전남)	1.89	해남군(전남)
	전체	1.0800	.2541	.60	관악구(서울)	1.89	해남군(전남)
	F (sig.)	59.769 (.000)	-	-	-	-	-
인구유입률	구	-.9000	1.6927	-4.73	동구(인천)	3.80	서구(인천)
	시	.3539	2.2126	-2.82	안산시(경기)	8.25	화성시(경기)
	군	-.4023	1.7468	-5.93	고성군(강원)	8.18	예천군(경북)
	전체	-.3033	1.9574	-5.93	고성군(강원)	8.25	화성시(경기)
	F (sig.)	8.008 (.000)	-	-	-	-	-

2. 출산자녀 순서별 출산장려금 시·군·구 비교분석

출산장려금 수준은 시·군·구 세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군이 가장 높고, 시는 중간이었으며, 구는 가장 낮았다. 흥미로운 현상은 출산장려금 제도를 도입한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평균의 관점에서 보면 첫째 자녀부터 다섯째 자녀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구 단위의 수준보다도 시 단위의 출산장려금 수준이 두 배 정도였고, 또한 시 단위보다도 군 단위가 두 배 정도로 많았다.

〈표 3〉에서와 같이 구 단위의 첫째 자녀 평균 출산장려금은 46만원 수준인데 비해 시 단위의 평균 출산장려금은 82만7000원 수준이었다. 시 단위가 구 단위보다는 두 배 정도 많았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그리고 군 단위는 시 단위보다 두 배 정도 많은 178만원5000원 수준이었으며,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이 같은 현상은 예외 없이 둘째 자녀의 출산장려금에서 다섯째 자녀의 출산장려금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시·군·구 구분 없이 첫째 자녀에서 다섯째 자녀에 이르기까지의 출산장려금은 점진적으로 상향조정되고 있었다. 다자녀일수록 출산장려금이 높아진다는 암묵적 동의가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구 단위의 경우에는 46만원, 69만원, 150만9000원. 212만원, 273만1000원으로 인

상되고 있었고, 시 단위는 82만7000원, 142만원, 277만7000원, 439만2000원, 471만5000원으로 인상되고 있었으며, 군 단위는 178만5000원, 315만8000원, 622만7000원, 810만6000원, 941만8000원으로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자녀의 출산장려금 최저수준은 구와 시는 각각 5만원과 3만원인데 반해 군은 10만원이었다. "최저"라는 꼬리를 붙이기는 했지만 출산 유인책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의 낮은 수준이었다. 〈표 3〉에서와 같이 둘째 자녀에서 셋째 자녀의 최저 출산장려금은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넷째 자녀와 다섯째 자녀의 경우 출산장려금은 30만원에서 70만원까지였다. 그 수준이 출산 자녀의 수에 따라 높아졌지만 모두 100만원 미만이었다. 최저수준만을 고려하면 출산율 제고에 영향을 주기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출산장려금이 제공되고 있다는 명분을 원하는 "명목적" 정책이라는 의미가 나타나고 있었다.

최대값을 기준으로 보면 첫째 자녀의 출산장려금은 구 단위 200만원, 시 단위 530만원, 군 단위 700만원으로서 최소값과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둘째 자녀의 경우도 구 단위 250만원, 시 단위 530만원, 군 단위 1230만원이었다. 그러나 다섯째 자녀의 경우 구, 시, 군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구 단위 3100만원, 시 단위 3000만원, 그리고 군 단위는 3530만원이었다. 지역 간 편차도 크지만 출산 자녀의 순위 별로 최소값과 최대값의 편차도 매우 크게 나타났다. 이 같은 점에서 출산장려금은 출산 그 자체보다는 다자녀를 향한 정책이라는 정책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표 3〉 출산자녀 순서에 따른 출산장려금 급여수준 시·군·구 비교분석

지역	통계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넷째 자녀	다섯째 자녀
구 (69)	평균	460,344	690,298	1,509,701	2,120,769	2,731,697
	최저	50,000	200,000	300,000	300,000	300,000
	최고	2,000,000	2,500,000	4,100,000	11,000,000	31,000,000
	없는 지역	40	2	2	4	8
시 (75)	평균	827,407	1,420,294	2,777,810	4,392,000	4,715,178
	최저	30,000	50,000	500,000	700,000	700,000
	최고	5,300,000	5,300,000	10,300,000	15,000,000	30,000,000
	없는 지역	21	7	1	1	2
군 (82)	평균	1,785,540	3,158,873	6,227,875	8,106,000	9,418,219
	최저	100,000	200,000	300,000	400,000	400,000
	최고	7,000,000	12,300,000	20,300,000	20,300,000	35,300,000
	없는 지역	8	3	2	7	9
전체 (226)	평균	1,211,210	1,833,925	3,632,253	5,003,775	5,789,314
	최저	30,000	50,000	300,000	300,000	300,000
	최고	7,000,000	12,3000,000	20,300,000	20,300,000	35,300,000
	없는 지역	69	12	5	12	19
F(sig.)		17.961(.000)	41.966(.000)	56.773(.000)	41.156(.000)	28.112(.000)

출산장려금이 전국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제공되고 있지만 출산장려금 제도가 없는 지역도 있었다. 출산장려금이 제공되지 않은 지역의 수도 자녀 출산 순서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전국 226개 연구대상 지역 중에서 첫째 자녀의 출산장려금은 30.5%에 해당되는 69개 지역에서 제공되지 않고 있었다. 시·군·구 단위별로 차이도 크게 나타났다. 69개 구 단위 중에서는 58.0%에 이르는 40개 지역이 출산장려금을 제공하지 않고 있었고, 75개 시 단위 중에서는 28%에 해당되는 21개 지역이 제공하지 않고 있었으며, 82개 군 단위 중에서는 9.8%에 해당되는 8개 지역에서 출산장려금이 제공되지 않았다. 현재 상태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지역에서 첫째 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의 비율이 가장 높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었다.

세종시를 제외한 7개 광역자치단체의 첫째 자녀 출산장려금 미도입 구 단위 40개 지역을 분석한 결과 한 곳도 도입되지 않은 구가 있는 광역자치단체도 있었다. 서울은 24개 구 중에서 16개가 미도입 지역이었고, 부산은 15개 구 단위 중에서 13개가 미도입 지역이었으며, 대구는 7개 구 단위 모두 미도입 상태였다. 인천광역시는 도입 상태가 양호하여 8개 구 중에서 한 개 지역만 제외하고 모두 도입 상태였으며, 광주광역시는 5개 구 모두 도입 상태였다. 대전은 5개 구 단위 중에서 2개, 그리고 울산은 4개 구 단위 중에서 1개 지역이 미도입 상태였다. 구 단위의 경우 인천의 한 지역과 대전의 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둘째 자녀의 출산장려금은 도입되어 있는 상태였다.

첫째 자녀 출산장려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21개 지역 중에서는 경기도가 가장 많았다. 28개 시 중에서 17개가 미도입 상태였다. 강원도는 7개 시 중에서 한 개, 충남은 8개 시 중에서 두 개, 그리고 경남 지역은 8개 시 중에서 한 개만이 미도입 상태였다. 나머지 충북, 전남, 전북, 경북 지역에는 첫째 자녀 출산장려금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지역은 한 곳도 없었다. 시 단위의 경우 둘째 자녀부터 출산장려금을 도입한 지역이 13개 지역이었고, 셋째 자녀부터 출산 장려금을 도입한 지역이 7개 지역이었다. 모든 시가 어떤 형식으로든 도입되어 있지만 경남의 한 지역의 경우에는 그 수준이 5만원 정도의 출산 축하 선물 수준이어서 출산장려금의 목적과는 거리가 있는 사례도 있었다.

첫째 자녀 출산장려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8개 군 단위 중에서 부산, 대구, 경북, 경남에 각각 한 개가 있었고, 강원도와 충남은 각각 두 개 군이 미도입 상태였다. 부산과 대구의 두 개 군은 둘째 자녀부터 출산장려금을 제공하는 방식이었고, 강원도의 두 개 지역 중 한 곳은 둘째 자녀부터, 다른 한 곳은 셋째 자녀부터 출산장려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도입된 상태였다. 첫째 자녀 출산장려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경남과 경북의 두 곳은 둘째 자녀부터 제도를 도입한 상태였다. 군 단위 중에서는 충남의 두 개 지역만이 출산장려금 제도가 미도입 상태였다. 이에 반해 경기, 충북, 전남, 전북에 속한 모든 군 단위에서는 첫째 자녀부터 출산장려금이 도입되어 있는 상태였다.

3. 출산장려금과 인구유입률의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 분석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출산장려금과 인구유입률의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전체와 시·군·구의 구조방정식 모형은 대체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방

정식에서 적합도 판정의 엄격한 기준은 없으나, 대체로 샘플 사이즈가 크지 않을 경우에는 X^2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야 하고, CFI는 .95보다 크고 RMSEA는 0.08보다 작아야 한다는 기준(Disabato et al., 2016)을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5개 구조방정식의 경우 X^2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CFI는 0.90~0.94 내에 위치하고 있었고, RMSEA는 0.071~0.086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다. 구 단위도 X^2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CFI는 0.085~0.095, RMSEA는 0.076~0.089 내에 위치하고 있었다. 시 단위의 경우도 X2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CFI는 0.92~0.95, RMSEA는 0.075~0.096 내에 위치하고 있었다. 군 단위도 X^2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CFI는 0.97~0.99, RMSEA는 0.051~0.076 내에 위치하고 있었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를 하나의 단위로 분석한 결과와 시, 군, 구를 각각 하나의 단위로 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시, 군, 구 간에도 유사한 결과보다는 다른 결과가 더 많이 나타났다. 다른 외부 요인을 일체 통제한 채 출산장려금과 인구유입 변수를 놓고 분석하여도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시·군·구 간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분석 결과를 정리한 〈그림 2〉에서와 같이 전국을 하나의 단위로 설정하고 분석할 경우 인구유입과 출산장려금이 직접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출산장려금이 인구유입 혹은 유출을 부추기는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구 단위의 경우에는 인구유출입이 독자적으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출산장려금이 인구유출입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직접 출산율에 미치는 경향도 거의 없었다. 시 단위는 출산장려금과 인구유입이 직접 출산율 제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출산장려금이 인구유출입에 미치는 효과는 거의 없었다. 군 단위는 특이하게도 출산장려금이나 인구유출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전국을 하나의 단위로 분석한 경우 첫째에서 다섯째 자녀 출산장려금 모두 출산율에 긍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유입률도 출산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두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의 크기를 보면 출산장려금이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가 인구유입률이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보다 크게 나타났다. 첫째 자녀에서 다섯째 자녀의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는 β= .32***/.42***/.40***/.38***/.31***인데 반해 인구유입률이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는 β= .19**/.17**/.17**/.17**/.16**수준이었다. 그러나 매개효과의 출발이 되는 출산장려금과 인구유입률의 관계는 β=-.09/-.02/-.01/-.01/.00으로 요약되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었다.

구 단위의 경우 인구이동이 가장 용이한 지역이어서 그런지 인구유입률이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인데 반해 출산장려금이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는 거의 없었다. 또한 출산장려금이 인구유출입에 영향을 미쳐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에서와 같이 인구유입률의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는 β= .39***/.38***/.40***/.39***/.39***인데 반해 출산장려금의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는 β= .12/.18/.21*/.06/.04에 불과했다. 다만 셋째 자녀의 출산장려금은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 영향이 있는 것(β=.21**)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매개효과의 출발이 되는 출산장려금과 인구유입률의 관계는 다섯째 자녀의 경우를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었다. 다섯째 자녀의 경우 출산장려금이 인구유입에 영향을 미치고(β=.26*), 인구유입

이 다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β=.39***)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출산율 영향요인에 관한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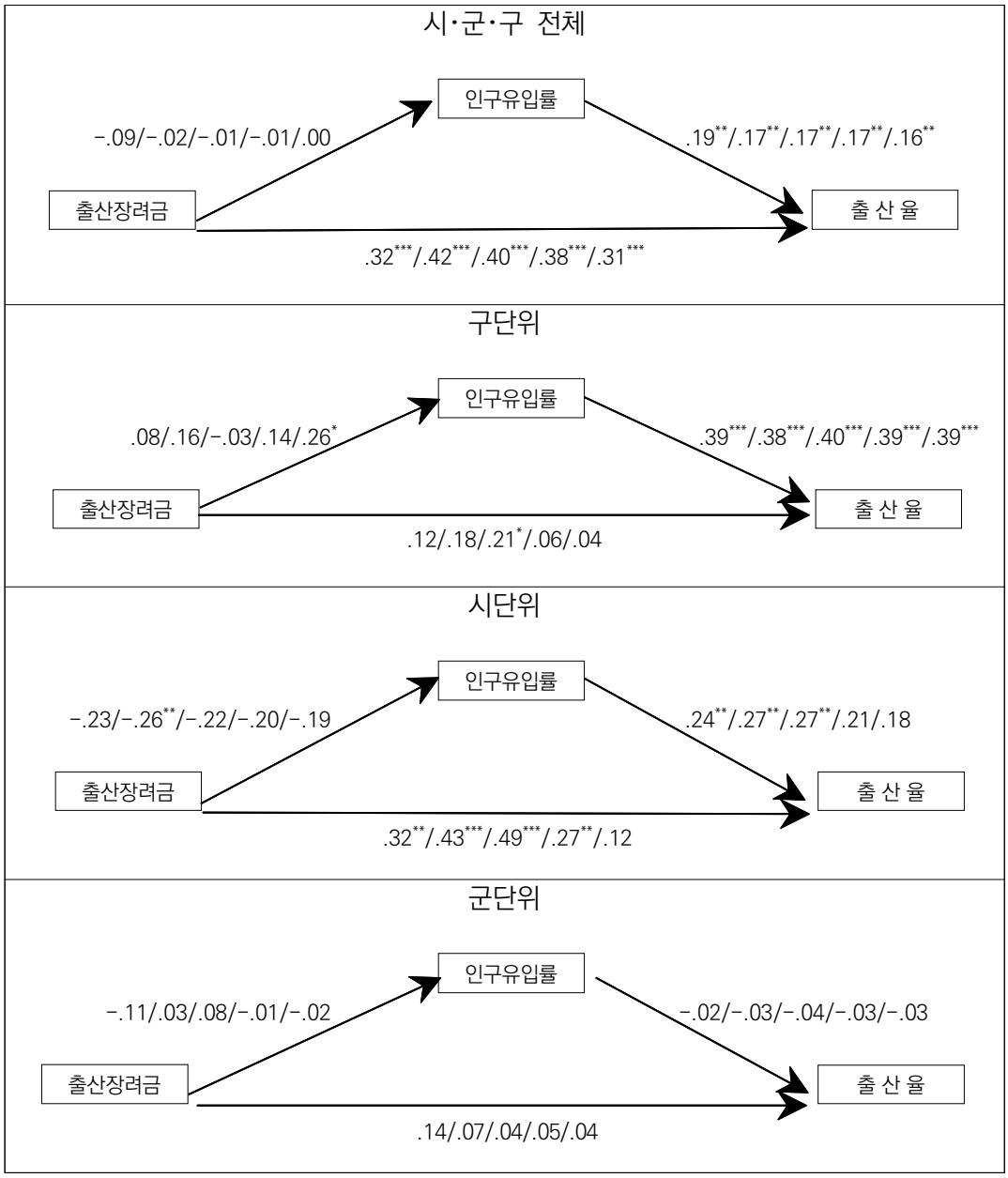

*〈05; **〈.01; ***〈.001

시 단위의 경우 출산장려금과 인구유입률이 대체로 출산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첫째부터 다섯째까지 전체 자녀에 걸쳐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다. 출산장려금의 경우 첫째에서 넷째까지는 출산율에 긍정적 영향(β= .32**/.43***/.49***/.27**/.12)을 미쳤고, 인구유입률의 경우 첫째에서 셋

째까지 영향(β= .24**/.27**/.27**)을 미쳤을 뿐이었다. 매개효과의 출발이 되는 출산장려금과 인구유입률의 관계는 둘째 자녀에게서만 유의미한 관계(β= -.26**)가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그 관계의 방향은 정의 관계가 아니라 부의 관계였다.

군 단위는 구나 시와 매우 다른 양상을 드러내고 있었다. 첫째에서 다섯째에 이르는 출산장려금과 인구유입률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에서 다섯째에 이르는 출산장려금 어느 지점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 출산장려금 수준의 높낮이나 인구유출입은 군 단위, 즉 농어촌 지역의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으며, 출산장려금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지역이었다. 또한 출산장려금과 인구유입률 사이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어 매개효과 역시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4. 요약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농어촌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지역의 문제였다. 합계출산율이 1.0보다 낮은 곳은 구 단위에서 가장 많았고, 평균 합계출산율도 1.0보다 낮은 0.87이었다. 군 단위는 합계출산율이 1.0보다 낮은 지역이 19.5%에 불과했으며, 평균합계출산율도 1.24 수준이었다. 저출산 문제가 농어촌 지역을 떠나 도시 지역의 문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 단위의 출산장려금은 첫째 자녀부터 다섯째 자녀에 이르기까지 가장 낮았고, 다음이 시 단위였으며, 농어촌형 기초자치단체로 분류되는 군 단위가 가장 높았다. 출산장려금은 구 단위보다 시 단위가 두 배, 그리고 시 단위보다 군 단위가 두 배 수준이었다.

기초자치단체가 현금급여 방식으로 제공하는 출산장려금은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효과가 전지역에 걸쳐 뚜렷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시·군·구를 구분하지 않고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분석을 실시하면 출산장려금은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시, 군, 구를 별도의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할 경우에는 출산장려금의 출산율 제고 효과가 나타나는 지점보다 나타나지 않는 지점이 더 많았고, 세 그룹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만 발견할 수 있었을 뿐 공통점을 찾기가 매우 어려웠다.

〈표 4〉의 요약표처럼 전국을 한 단위로 보고 분석하면 출산장려금의 출산율 제고효과는 인구유입으로 인한 출산율 제고의 직접효과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세 유형을 개별적으로 보면 구 단위는 인구유입이 출산율 제고에 영향을 미쳤지만 출산장려금이 출산율 제고에 영향을 미친 지점은 셋째 자녀뿐이었다. 시 단위는 첫째에서 넷째 자녀의 출산장려금은 출산율 제고효과가 나타났고, 인구유입의 직접효과로 첫째에서 셋째 자녀까지 출산율 제고가 나타났다. 또한 출산장려금은 인구유입률에 영향을 미치는 지점이 나타났는데 둘째 자녀의 경우 출산장려금과 인구유입과는 부의 관계(β= -.26**)였다가 인구유입은 출산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β= .27**)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군 단위에서는 출산장려금이 인구 유입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출산율 제고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군 단위에서는 출산장려금이 자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군 단위는 출산장려금 제도 도입의 출발점이었고, 출산율이 가장 우려되는

지역이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보면 시·군·구 중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탈바꿈을 했다. 출산장려금과 인구유입효과라는 단순화 모형을 기초로 분석할 때 출산장려금이라는 제도는 군 단위에서는 효과를 잃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결과였다.

〈표 4〉 전국 및 시·군·구별 출산율 영향요인 요약

자녀순위	관계	시·군·구 전체	구	시	군
첫째자녀	인구유입→출산율	O	O	O	X
	출산장려금→출산율	O	X	O	X
	출산장려금→인구유입→출산율	X	X	X	X
둘째자녀	인구유입→출산율	O	O	O	X
	출산장려금→출산율	O	X	O	X
	출산장려금→인구유입→출산율	X	X	-O	X
셋째자녀	인구유입→출산율	O	O	O	X
	출산장려금→출산율	O	O	O	X
	출산장려금→인구유입→출산율	X	X	X	X
넷째자녀	인구유입→출산율	O	O	X	X
	출산장려금→출산율	O	X	O	X
	출산장려금→인구유입→출산율	X	X	X	X
다섯째 자녀	인구유입→출산율	O	O	X	X
	출산장려금→출산율	O	X	X	X
	출산장려금→인구유입→출산율	X	O	X	X

출산장려금이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인구이동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전국 시·군·구를 하나의 단위로 설정한 경우와 군 단위에서는 매개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지만 구 단위와 시 단위에서는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구 단위의 경우 다섯째 자녀 출산장려금은 인구유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고, 이어 인구유입률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시 단위의 경우 둘째 자녀의 출산장려금이 인구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의 관계는 정의 관계가 아니라 부의 관계였다. 따라서 출산장려금이 인구유입에 영향을 미쳐 출산율을 높이는 것과 같은 매개효과는 있다고 하더라도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V. 결론

본 연구의 결과 현금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출산장려금의 출산율 제고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 혹은 부정의 방식으로 단언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 효과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인구유입이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도 지역에 따라 달랐다. 그러나 출산율이 인구유입

에 영향을 미쳐 다시 인구유입이 출산율로 이어지는 매개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적어도 두 가지 관점에서 저출산 정책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었다.

첫째, 저출산 정책 추진의 중점관리대상 지역을 대도시의 기초자치단체로 설정해야 한다는 발상의 전환이다. 지금까지 저출산은 고령화와 밀접하게 연계된 사회현상이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농어촌 지역의 문제라는 가정 하에서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저출산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농어촌의 특성을 가진 군 단위가 아니었다. 고령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시형 기초자치단체, 즉 구 단위였다. 구 단위는 시나 군 단위에 비해 출산율이 가장 낮아 출산장려금 수준이 높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산장려금 수준이 가장 낮았다.

구체적으로 접근하면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서 한 곳도 출산율 1.0을 넘긴 지역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도시형 자치구는 출산장려금 정책의 도입과 시행에서 농어촌형 군 단위보다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자치구의 평균 출산장려금은 시 단위의 절반 수준이었으며, 시 단위는 군 단위의 절반 수준이었다는 사실만보아도 저출산 정책에 관한 도시형 기초자치단체의 소극적 태도를 알 수 있다. 중앙정부에서는 도시형 기초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저출산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하는 유인책이 필요하다. 유인책만으로 기초자차단체가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성이 있는 정책수단을 개발하여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적어도 시·군·구를 각각의 단위로 설정하여 저출산 대책을 세우고 집행해야 정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다. 외부요인을 통제하고 출산장려금과 인구유입 변수만을 활용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출산율 제고 영향요인 유형은 전국을 하나의 단위로 설정하고 분석한 결과 및 시·군·구 별로 분석한 결과가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시·군·구 구분 없이 전국을 하나의 단위로 하고 분석하면 출산장려금과 인구유입의 효과가 첫째에서 다섯째 자녀에 이르기까지 고르게 나타나지만 시, 군, 구에는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출산장려금이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는 거의 없었다. 매개효과가 일부 지점에 나타나기는 하였지만 대부분의 지점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대도시형 기초자치단체로서 구 단위에서는 인구유입이 출산율 제고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출산장려금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었다. 셋째 자녀의 출산장려금만이 출산율 제고에 영향을 미쳤고, 나머지 자녀의 장려금은 출산율과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구 단위의 경우 출산장려금 수준이 시와 군 단위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일 수도 있지만 현재 수준에서는 인구유입으로 인한 출산율 증가가 출산장려금의 정책효과로 나타난 출산율 증가로 비춰지는 착시 현상이 대도시 자치구에서는 나타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 단위에서는 출산장려금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시의 출산장려금 수준은 군 단위의 절반이었고, 구 단위의 두 배였다. 시·군·구에서 도시화 혹은 인구밀집도의 관점에서 중간인데도 불구하고 시 단위의 경우 첫째 자녀에서 넷째 자녀에 이르는 출산장려금의 효과도 있었으며, 첫째에서 셋째 자녀까지는 인구유입률이 출산율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효과도 있었다. 또한 출산장려금이 인구

유입에 형향을 미치는 매개효과도 발견되었다. 출산장려금 조절을 통하여 출산율이 조정되고 있는 지역은 시 단위였다.

농어촌으로 구성되어 있는 군 단위에서는 출산장려금이 인구유인책으로도 작용하지 않았고, 출산율 제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군 단위에서는 출산장려금 이외의 요인을 발굴하여 저출산 정책에 활용해야만 출산율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농어촌 군 단위에는 출산장려금 이외의 "보충적" 출산장려지원정책의 도입이 요구된다. 예컨대, 자녀 양육과 보육에 필요한 현금 및 현물서비스 패키지를 개발하여 활용함으로써 출산장려금의 효과를 최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하면 출산장려금은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장려금이 출산율 제고에 기대한 것만큼 기여하지 못하고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주요 원인은 출산장려금의 정책의 대상설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의 주요 대상을 농어촌 저출산에서 도시형 저출산으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녀 출산 그 자체보다는 다자녀 출산으로 전환한 상태에서 출산장려금이 지급되며 그 효과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를 시·군·구로 구분하고, 인구밀집지역 구, 도농통합형 시, 그리고 농어촌지역 군에 따라 출산장려금의 효과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출산장려금이 인구유입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모형이 단순하며, 지나치게 통제를 가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 분석 결과를 근거로 향후 시·군·구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수, 각 기초자치단체의 행·재정 자원 변수 등을 추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김민곤·천지은. (2016). 저출산 정책으로서 출산장려금의 정책효과성 연구: 서울 25개 자치구들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30(2), 163-190.

김우영·이정만. (2018). 출산장려금의 출산율 제고 효과: 충청지역을 대상으로. 「노동정책연구」, 18(2), 61-98.

김현숙·정진화. (2019). OECD 국가들의 출산율 결정요인: 가족친화정책과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에 대한 분석. 「여성경제연구」, 16(1), 27-50.

박창우·송헌제. (2014). 출산장려금 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추정. 「응용경제」, 16(1), 5-34.

석호원. (2011). 출산장려금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5(2), 143-180.

송헌제·김현아. (2014). 출산장려금과 지역 간 인구이동. 「응용경제」, 16(3), 165-199.

이명석·김근세·김대건. (2012).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정책 효과분석. 「한국행정연구」, 21(3), 147-174.

이병호·박민근. (2017). 다자녀 출산의 결정요인 연구: 출산장려금 정책의 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7(3), 318-342.

이승주·문승현. (2017). 직장 기혼 여성의 첫 자녀 출산의사와 관련된 근로 및 출산장려제도 요인분석. 55, 129-155.

이미옥·명성준. (2015). 출산장려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29(1), 331-351.

이충환·신준섭. (2013). 전국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 현황과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지방행정연구」, 27(1), 97-124.

최영·김슬기. (2017). OECD 국가의 아동가족 현금지원정책과 출산율간의 관계: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60, 59-86.

최은희·조택희. (2016). 패널분석을 이용한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1), 59-71.

통계청. (2019). e나라통계의 합계출산율(시도/시군구)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v〉.

Andersen, Synøve N., Drange, Nina and Lappegård, Trude. (2018). Can a Cash Transfer to Families Change Fertility Behavior? *Demographic Research*, 38, 897-928.

Björklund, Anders. (2006). Does Family Policy Affect Fertility?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9(1), 3-24.

Disabato, D. J., Goodman, F. R., Kashdan, T. B., Short, J. L., & Jarden, A. (2016). Different types of well-being? A cross-cultural examination of hedonic and eudaimonic well-being. *Psychological Assessment*, 28(5), 471-482.

Riphahn, Regina T. and Wiynck, Federik. (2017). Fertility Effects of Child Benefit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30(4), 1135-1184.

World Bank. (2019). Total Fertility Rate (Birth Per Woman).
〈https://datacatalog.worldbank.org/fertility-rate-total-births-woman-7〉.

허만형(許萬亨): 미국 Univ. of Colorado, Denver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논문: Economic Self-Sufficiency: A Study of Southeast Asian Refugees in Colorado, 1990). 현재 중앙대 공공인재학부에 재직 중이며, 주요관심분야는 복지정책, 정책분석평가, 정보화정책이다. 주요논문으로는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에 실린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determinants of self-efficacy: An empirical study of Korean older adults" 및 『지방행정연구』에 실린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 및 의무고용 준수 영향요인 연구: 2016~2017년간 시·군·구 비교분석"이 있다. 주요 저서로는 『세계의 연금, 한국의 연금』과 『불평등은 무엇인가?』가 있다(mhhur@cau.ac.kr).

〈논문접수일: 2020. 2. 10 / 심사개시일: 2020. 2. 11 / 심사완료일: 2020. 3. 10〉

Abstract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birth Rates and Childbirth Allowances: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Si, Gun, Gu Types of Local Governments

Hur, Mann Hyung

Low birth rate has been a serious problem in Korea. This study explored whether the childbirth allowances paid by the local governments have directly influenced the increase in the birth rate, or have affected the influx of the population first and the increase in the birth rate later. The targets of this research was 226 local governments across Korea. Data was collected from the database managed under the section of e-regional indicators in the Statistics Korea and i-sarang under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is study showed that the low birth rate was more serious in the urbanized local governments or Gu than "rural" local governments or Gun. The birth rates were more closely associated with the childbirth allowances than the influx of population when a set of multiple regressions was conducted with the data collected from all 226 local governments. However, the mediation effect of the influx between childbirth allowances and birth rates did not occur except for the fifth baby's childbirth allowance. In the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with the data collected from 69 Gu types only, the childbirth rates were associated with the influx of population, but did mostly not show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childbirth allowances. The childbirth rates, in the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with the data collected from 75 Si types only, were mostly associated with the childbirth allowances and the influx of population. However, the mediation effect rarely occurred. In the regression analysis with the data collected from 82 Gun types only, no association was shown between the childbirth rate and the childbirth allowance. A significant mediate effect of the influx of population did not occurred between the birth rate and the fifth baby's allowance in the 69 Gu types.

Key Words: low birth rate, childbirth allowance, mediate effect, population influx, multichild